

2024년도

제1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19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2024년도 제1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원 서 접 수	시 험 장 소	시 행 지 역	시 험 일 자	합 격 자 발 표
제1차 시 험	[정기 원서접수] '24. 7. 15.(월) 09:00 ~ 7. 19.(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8. 17.(토)	10. 2.(수)
	[빈자리 원서접수] '24. 8. 8.(목) 09:00 ~ 8. 9.(금) 18:00				
제2차 시 험	'24. 10. 21.(월) 09:00 ~ 10. 25.(금) 18: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11. 9.(토) ~ 11. 10.(일)	11. 27.(수)

- * 제1차 시험 면제자('23년도 제18회 제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는 제2차 시험 접수기간 내 접수완료하여야 제2차 시험 응시 가능
- * 빈자리 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 정기접수 마감일 13:00~18:00 및 빈자리접수 기간 중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 면접시험일은 시행지역별로 수험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시험영역 및 시험시간

○ 시험영역 · 과목 및 시험방법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4조3항)

구 분	시 험 영 역	과 목 예 시
제1차 시험	①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②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③ 한국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문학개론 등
	④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제2차 시험	① 면접시험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원 인성 및 소양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기 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 과목별 시험시간

- 제1차 시험(필기)

시행일	교시	시험영역	입실완료	시험시간	배점 및 문항 수	시험방법
8. 17. (토)	1	① 한국어학 ②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09:00	09:30 ~ 11:10 (100분)	① 90점, 60문항 ② 30점, 20문항	4지택일형
	휴식시간 11:10 ~ 12:00(50분)					
	2	③ 한국문화 ④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12:00	12:30 ~ 15:00 (150분)	③ 30점, 20문항 ④ 150점, 93문항	③ 4지택일형 ④ 4지택일형 주관식(1문항)

- 제2차 시험(면접)

시행일	시험시간	평가영역	비 고
11. 9.(토) ~ 11. 10.(일)	1인당 10분 내외	·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 한국어능력 · 교사의 적성 및 교직원 · 인성 및 소양	수험인원에 따라 시험일수 조정 가능

3. 응시자격

○ 응시자격: 없음

※ 단, 한국어교원3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응시일 이전에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4. 결격사유 및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 결격사유: 없음

○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 제1차 시험 면제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 제1차(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제19회 제2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제18회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금년도 제2차 원서접수 기간에 반드시 접수완료하여야 함

6. 합격자 결정 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제1차 시험(필기)은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그리고 전 영역 총점(300점)의 60퍼센트(18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면접)은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7. 응시원서 접수

○ 원서접수 기간

구 분	원서 접수	빈자리 접수
제1차 시험	'24. 7. 15.(월) 09:00 ~ '24. 7. 19.(금) 18:00	'24. 8. 8.(월) 09:00 ~ '24. 8. 9.(금) 18:00
	'24. 10. 21.(월) 09:00 ~ '24. 10. 25.(금) 18:00	'없음

○ 원서접수 방법

- Q-Net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지사)를 위해 원서접수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

- 시험 장소는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 원서접수 마감시각(접수마감일 18:00)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 (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변경사항 발생 시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이므로 Q-Net의 회원 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 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 접수

-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로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자)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에서 제2차 시험 원서 접수 가능

- (제1차 시험 재응시를 희망하는 자) 재응시 가능하며 단, 원서접수 시 제1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하여도 당회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합격으로 인정함

○ 응시수수료 납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19호)

- 응시수수료: 1차 45,000원, 2차 25,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 단,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응시수수료 환불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19호)

구 분	환 불 기 준
100%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 각 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60% 환불	• 각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 각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 신청을 한 경우 • 시험 결시자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시험 일자에 공단에서 시행하는 2개 이상의 자격을 접수하게 되어 한 자격을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시험일시를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제외) 2. 수험원서를 접수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이외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으로 시험장이 배정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시험장소를 사전에 고지하여 수험자가 선택한 경우는 제외) 3. 시험시설장비의 고장, 정전, 단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으로 시행을 하지 못한 경우 4. 기타 시험 관련 고지 오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착오에 대한 정정 공지를 하였을 경우 제외)	

*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koreanedu>) → “마이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재난문자,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신청할 경우 큐넷 메인 마이페이지-원서접수관리-사후환불신청에서 신청

○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수험표는 시험 당일 지참
- 수험표 분실 시 시험 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 확인 서비스 제공

○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취소 후 재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 응시편의 제공

- 응시편의 제공 희망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 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 또는 응시편의제공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해당시험 당일 시험실 입실 완료시간 전까지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편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 응시 편의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 (장애 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 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상태)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 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국가전문자격시험 유형별 응시 편의 제공 사항 안내’ 참고 [붙임1]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 진단서에 따름)
 - ※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을 참조하여 제공 받고자 하는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
 - ※ 단,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8. 시험 시행기관

시행기관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1차) 02	2137-0554
			(2차) 02	2137-0553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801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84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69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3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34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97
제주지사 필기시험부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2

9.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기간 : ' 24. 8. 17.(토) 14:00 ~ 8. 23.(금) 18:00[7일간]
- 방법 :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koreanedu>)에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같음

10.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일시

- 제1차 시험: ' 24. 10. 2.(수) 09:00
- 제2차 시험: ' 24. 11. 27.(수) 09:00

○ 합격자 발표방법

- Q-Net 한국어교육능력검정(<http://www.Q-Net.or.kr/site/koreanedu>) 홈페이지 [60일간]
- 자동안내전화(ARS): ☎ 1666-0100 [4일간, 유료]

11. 자격증 발급

○ 발급 심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 발급 심사신청 절차

-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온라인 심사신청 완료
- ↓
- ② 심사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발송
- ↓
- ③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교원자격 심사과정 (약 50일 소요)
- ↓
- ④ 한국어교원자격증(3급) 발급

○ 심사신청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 고
①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1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온라인 신청
②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원본 1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 서식]」서식에 맞춰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육기관에서 발급 받은 이수증명서. 법정서식과 다를 경우 인정되지 않음.
③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1차, 2차) 각 1부(공단 발행)	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koreanedu) 로그인 후 '확인서발급' 메뉴에서 신청 및 즉시 발급 가능

* 합격확인서는 원본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심사신청서류 우편 발송 주소

- (우편번호 :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담당자 앞)
- “한국어교원자격증(3급) 발급 관련 서류 재중” 명시

[국립국어원 교원자격심사 일정]

차 수	일 정	비 고
1차	3월 초 ~ 4월 말	상세 심사 일정은 변동가능하며,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 별도 공지 예정
2차	8월 초 ~ 10월 말	
3차	12월 초 ~ 차년도 1월 말	

※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심사 신청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전화 (02-2669-9775 연결 후 2번 한국어교원 관련 문의)를 통해 문의

12. 수험자 유의사항

【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교(차)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PASS앱을 통한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부서관·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모바일 큐넷(Q-Net) 전자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 및 정부24 재학증명서(사진(컬러)·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1차 2교시에 한해 시험시간 1/2 경과 이후 중도퇴실이 가능합니다.
 -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 시험 **무효처리**
 - ※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1/2경과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1차 2교시는 1/2시간 경과 전까지)**
 - ※ 1차 2교시에 한하여 2시간 경과시부터 시험위원 동행하에 화장실 이용 후 시험실 재입실 가능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0점)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한국어교육 능력검정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시계(손목시계, 탁상시계 등)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시험시간은 타종 등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사용을 금함
 -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 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 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통신·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 밴드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 장애인 수험자로서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국가전문자격시험 유형별 응시 편의 제공 사항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장애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애인 수험자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편의 제공 불가)

15. 접수 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큐넷 한국어교육 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 객관식시험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 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형별 기재란에 표시된 형별(A형 공통)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주관식시험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2차 면접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자는 일시·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 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입실시간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시간 내 도착하여야 함
2.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www.Q-Net.or.kr/site/koreanedu) 참고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편의제공 대상		편의구분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서류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시험시간 1.5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문제지대독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 상기 항목 중 택1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답안작성 방법	- 확대 답안지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편의제공 대상		편의구분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서류
지체 장애	(1) 상지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2) 상지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3) 하지(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시험시간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시험시간 1.1배 연장 ※ 단, 시험 중 이동이 있거나 서서 작업하는 종목에 한정	①,②,③호 중 하나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지체 장애	(4) 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1) 또는 (2)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 (3)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
답안작성 방법 및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청각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시험실 배정		①,②,③호 중 하나
신장·심장 정류·요루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①,②,③호 중 하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자	일시적 신체장애	편의제공 사항 전반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임신부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제출서류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증명서 사본 1부.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불인정, 유효기간 필요) 원본 1부.
 - ⑤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사실확인서 원본 1부.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 84분